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1 선고 2014가단5345386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신용보증기금

피고1. A

2. B

3. C

변론 종결2015. 5. 20.

판결 선고2015. 7. 1.

주 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64,215,667원과 그중 63,714,929원에 대하여 2014. 11. 21.부터 2015. 3. 24.까지 연 12%, 2015. 3. 2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 가. 피고 A과 피고 B 사이의 2014. 8. 20.자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 나. 피고 B은 피고 A에게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14. 8. 22. 접수 제131726호로 마친 소유권지분전부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별지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 가. 피고 A과 피고 C 사이의 2014. 5. 28.자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 나. 피고 C은 피고 A에게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등기계 2014. 5. 29. 접수 제1689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 (1) 원고는 2013. 3. 27. 피고 A이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D 경영자금을 대출받는 원리금을 보증하기 위하여 보증금액 72,000,000원, 보증기한 2018. 3. 26.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을 하였다.
- (2) 원고는 위 신용보증을 하면서,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보증채무 이행금액과 이에 대한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 신용보증기금이 정하는 비율과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손해금,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과 집행을 위한 절차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신용보증사고 및 대위변제

- (1) 피고 A은 2014. 8. 18. D의 폐업신고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위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원고는 2014. 11. 21. 위 은행에 대출원리금 63,714,929원을 대위변제하였고, 피고 A의 재산에 대한 채권보전비용으로 500,738원을 지출하였다.
- (2) 원고가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정한 연체이율은 대위변제일부터 현재까지 연 12%이다.

다. 피고 A의 소유권이전

- (1) 피고 A은 2014. 8. 20. 피고 B에게 별지1. 기재 부동산 지분 전부를 대금 6,600만 원으로 하여 매도하고,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14. 8. 22. 접수 제131726호로 소유권지분전부이전등기를 마쳤다.
- (2) 또한 피고 A은 2014. 5. 28. 피고 C에게 별지2. 기재 부동산을 대금 6,700만 원으로 하여 매도하고,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등기계 2014. 5. 29. 접수 제16894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위 두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이 사건 각 이전등기'라 한다)

(3) 한편, 피고 A은 이 사건 각 매매계약 및 이전등기 당시 적극재산으로 시가 1억 2,000만 원 상당의 서울 종로구 E 2층 209호를 보유한 반면, 소극재산으로 원고에 대한 채무 64,215,667원, 피고 C에 대한 채무 8,000만 원, 피고 B에 대한 채무 1억 원, 현대카드 채무 7,500,000원, 신한카드 채무 8,265,000원, 하나SK카드 채무 8,046,000원, 교보생명 대출금 채무 2,293,000원 등을 부담하고 있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가 제1 내지 5호증,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전국은행연합회의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에 대한 회신, 국토교통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금원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원고에게 구상금채무 64,215,667원과 그중 대위변제금 63,714,929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4. 11. 2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5. 3. 24.까지는 약정에 의한 연 12%의, 2015. 3. 25.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에 관한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이 2014. 8. 18. 폐업신고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이 사건 각 매매계약 및 이전등기 당시는 가까운 장래에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구상금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므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또한 피고 A은 이 사건 각 매매계약 및 이전등기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그러한 상태에서 피고 A이 피고 B, 피고 C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이 사건 각 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므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원고 등 채권자들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채무자인 피고 A은 채권자들을 해할 의사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각 이전등기를 마쳤다고 인정되고, 수익자인 피고 B, 피고 C의 악의 또한 추정된다.

나. 피고 B의 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 B의 주장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 A의 전 남편 F의 부탁으로 피고 A으로부터 약속어음 공증을 받으면서 1억 원을 대여하면서 미변제 시 부동산을 대물변제 받기로 하였다. 이 사건 이전등기 당시 원고 등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였다.

(2) 그러나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다른 채권자들에 우선하여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기 위한 인식이나 의사가 전혀 없었던 선의의 수익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 B은 피고 A의 전 남편 F과 함께 2003. 8. 5. 별지1. 기재 부동산을 1/2 지분을 매수하였고, 2006. 8.부터 피고 A과의 거래내역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피고 A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그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

(3) 결국, 피고 B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다. 피고 C의 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 C의 주장 요지는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이전등기 당시까지 피고 A에게 8,0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 A이 일시상환이 어려워니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여 현금화하라고 하여 이 사건 이전등기를 한 것이다. 당시 피고 A의 신용상태를 알지 못하여 원고 등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였다.

(2) 그러나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다른 채권자들에 우선하여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기 위한 인식이나 의사가 전혀 없었던 선의의 수익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 C과 피고 A은 2006. 9.경부터 제주와 계원의 관계로 오랫동안 금전거래를 하여 긴밀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 C이 피고 A에게 8,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위 대여가 사실이더라도,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그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매도하는 것은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

(3) 결국, 피고 C의 위 항변 역시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 A과 피고 B, 피고 C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B, 피고 C은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A에게 이 사건 각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 청구 전부 인용

판사김용찬

별지